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61<sup>th</sup> October 2013

- ▶ WHERE IS GRACE CHANG?:  
ALL I REALLY NEED TO KNOW IS WHAT  
I LEARNED IN KINDERGARTEN.  
..... 2
- ▶ ABOUT WRITERS  
..... 2
- ▶ COVER STORY:  
관세청·금감원 외환거래 관리감독  
협업체계 강화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자본거래 관리의 필요성  
..... 3
- ▶ FTA NEWS:  
『2014 년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베트남  
FTA』 체결선언  
..... 5
- ▶ VOICES FROM THE FIELDS: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 7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9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㉔  
..... 11

##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http://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http://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All I really need to know is what I learned in Kindergarten.*



장승희  
 대표 관세사

우리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얼마 전 미국 초등학교 1 학년 교실에 걸린 포스터 사진에 적힌 내용입니다.

**“Conflicts are disagreements. are normal. happen when your needs are different than the needs of somebody else. can be positive or negative. can help us grow.”**

Conflicts, 갈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 학년 아이들의 사회에도 각자 원하는 것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름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오는 갈등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올바르게 배우지 못해서인지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는 인간관계입니다. 다름(difference)은 틀림(wrong)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도 많이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딪치면서 끝없이 깨닫고 배워나가는 것인가 봅니다.

10 월의 cover story 는 수출입기업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외환관리는 철저히 관리 되고 있으나 자본거래에 따른 관리는 간과되고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소한 실수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FTA News 는 지난 9 월초 양국정상의 선언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한-베트남의 포괄적 FTA** 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Voices From The Fields 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이번 호부터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소식』을 이동현 관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나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로 알아보는 관세평가는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로열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결실을 이루어가는 10 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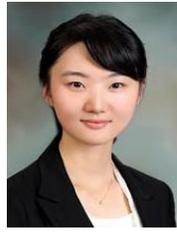
COVER STORY - /관세 법령 변경 -  
 관세청·금감원 외환거래 관리감독  
 협업체계 강화에 따른 수출입기업  
 의 자본거래 관리의 필요성



이동현 관세사  
 (dhlee@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eam
  - 원산지 관리자
  - FTA 컨설팅

FTA News-  
 『2014 년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  
 베트남 FTA』 체결선언



임보 관세사  
 (bhlim@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前 인천경기지사
  - FTA Team
  - 수출입 통관, 환급, FTA 컨설팅 및 심사업무 수행
  - 28 기 관세사 수석합격

Voices From The Fields-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김병진 관세사  
 (bjkim@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지사 지사장
  - 소비재 통관 전담 관세사
  - 2011 년 납세자의 날 인천세관장 표창수여
  - 통관실무 교육 강사
  - 국제무역사

RULINGS @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로열티  
 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신성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전략기획실 이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前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Cover  
Story

# 관세청·금감원 외환거래 관리감독 협업체계 강화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자본거래 관리의 필요성

최근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조세도피처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등 외환거래 관계당국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일선 수출입기업은 경상 거래에 따른 외환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을 비롯한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관계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이, 자본 및 용역거래는 금융감독원이 각각 관리감독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구분으로 인하여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사안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금번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운영상의 미비점 해소 및 외환거래 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하여 금감원과 관세청에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외환거래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관별 정보갭을 해소하고 감독업무의 적시성,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1 만불 초과 송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정보는 이미 공유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정보공유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을 비롯한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기재부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에 따라 1 년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출입기업이 행하는 자본거래는 금감원·관세청 간 업무영역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외환관리업무가 강화될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소식지에서 수출입거래 대금의 상계, 제 3 자 지급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준수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법개정에 따라 이러한 경상거래에 따른 외환 거래뿐만 아니라 상기한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관세청에서 공동 검사권을 가지는 등 수출입기업의 외국환거래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거래에 대한 내부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현

[dhlee@customsservice.co.kr](mailto:dhlee@customsservice.co.kr)

신고대상 자본거래	신고비대상 자본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금 및 신탁거래</li> <li>·금전대차 및 채무보증거래</li> <li>·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 매매</li> <li>·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li> <li>·증권의 발행 또는 취득</li> <li>·파생금융거래</li> <li>·부동산거래</li> <li>·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li> <li>·해외직접투자</li> <li>·현지금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은행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li> <li>·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li> <li>·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로서 행하는 거래</li> <li>·외국환평형기금이 행하는 거래</li> <li>·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신고한 거래</li> </ul>

< 참고 :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비대상 자본거래 >

## ‘2014 년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베트남 FTA, 체결선언

지난 9 월 7 일 대통령과 수행경제인 79 명이 베트남 4 박 5 일 일정으로 순방을 다녀온 바 있다. 이를 통해 양국 정상은 정상성명을 통해 2020 년까지 교역 700 억불이라는 교역목표를 제시하고 2014 년까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선언하였다.

이번에 제시된 2020 년 700 억불은 지난해 양국 간 무역액 216.7 억불의 3 배가 넘는 액수로서 양국 정상이 무역, 투자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 한-베트남 교역현황

지난 ‘92 년 한-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양국간 교역규모는 40 배 이상 성장하여 ’13.6 월 베트남은 아세안 제 2 위, 전세계 6 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 ‘13.6 월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억불): ①싱가포르(171.9), ②베트남(133.2)

’13.6 월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100.4 억불(전년대비 34.5% 증가), 수입액은 32.8 억불(전년대비 32.1% 증가)으로, 67.6 억불 흑자 기록하였으며, (\* 전통적으로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국임) 주요 수출 품목은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생산과 관련된 부품, 소재 위주인 반면, 수입품목에는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생산한 의류, 신발, 섬유제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 한-베트남 품목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순위	수출 ('13.6)			수입('13.6)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1,403	33.1	원유	613	142.1
2	무선통신기기	691	190.5	의류	542	38.4
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54	101	신발	189	25.3
4	합성수지	548	33.6	목재류	112	36.1
5	철강판	497	△14.6	기타섬유제품	101	23.1
	총계	10,044	34.5	총계	3,284	32.1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한-베트남 FTA 효과

통상분야에서 양국이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2014 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베트남 FTA 체결을 선언하고, 이를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금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가 체결되어 있지만 자유화 수준이 낮아 일-

베트남 EPA<sup>1</sup> ('09.10 발효)를 체결한 일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 베트남의 對한국 양허수준이 80% 수준('12년, 품목수 기준)인데 비해 對일본 양허수준은 92% ('14년 대부분 품목의 관세 인하 예정)

한-베트남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 타결될 경우, 우리 수출주력품목의 베트남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서비스·투자·통관 뿐만 아니라 新무역규범인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노동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한-아세안 FTA에는 규범 요소가 전혀 없으며, 일-베 EPA에도 지재권 및 경쟁만 포함

**한-베트남 FTA “높은 수준”, “포괄적”의 구체적 의미**  
일반적으로 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이란 협상 대상 품목수 또는 수입액 기준 90% 이상 관세 철폐를 의미하며,

○ 한-베트남 FTA 체결로 한-아세안 FTA 수준보다 높고 최소한 일.베 EPA 양허수준(최장 17년간 품목수 기준 92% 관세철폐) 이상의 양허 개선을 노력하고 (\* 한-아세안 FTA의 경우, 최장 10년간 품목수 기준 90%의 관세철폐 달성) 아울러, 양허 범위뿐만 아니라 즉시철폐 비율을 높이고, 관세철폐 일정을 단축시키겠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 중-아세안 FTA 일반품목은 '15년 관세철폐로 한국보다 관세철폐 일정이 빠름)

○ 또한 ‘포괄적’은 FTA에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뿐만 아니라 新무역규범인 지재권,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등 전반적인 분야를 포함시키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EU는 올 2월 공동성명을 통해 FTA 협상을 공식화했고, 일본의 경우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선언을 했으며, EU와 FTA 협상을 개시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 또한, 베트남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등과의 FTA 체결을 협상 중에 있다. 세계의 변화흐름에 따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또한 전략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한국이 FTA 시장을 선점한 만큼 이의 활용을 위한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이다. EPA는 관세 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협정 체결국들은 느슨한 형태로 경제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임보화  
([bhlim@customsservice.co.kr](mailto:bhlim@customsservice.co.kr))

FTA	관세철폐 일정 (품목수 기준)	
	한국	베트남
한-아세안 FTA ('07.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품목 (90%, 관세 철폐)</li> <li>- ('10) 관세철폐 완료</li> <li>○ 민감품목 (7%, 관세 인하)</li> <li>- ('16) 0-5%로 인하</li> <li>○ 초민감품목 (3%)</li> <li>- 관세 상한, 관세 인하, 관세할당, 양허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품목 (90%, 관세 철폐)</li> <li>- ('13) 50%, ('15) 90%, ('16) 95%, ('18) 100% 관세철폐 완료</li> <li>○ 민감품목 (7%, 관세 인하)</li> <li>- ('17) 20%, ('21) 0-5%로 인하</li> <li>○ 초민감품목 (3%)</li> <li>- 관세 상한, 관세 인하, 관세할당, 양허제외</li> </ul>
일-베트남 EPA ('09.10월)	일본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철폐 품목 (93%)</li> <li>- ('09, 즉시) 88%, ('19) 92%, ('24) 관세철폐 완료</li> <li>○ 기존관세유지, 관세인하, 관세할당, 양허제외 등 (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철폐 품목 (92%)</li> <li>- ('09, 즉시) 28%, ('19) 75%, ('24) 90%, ('26) 관세철폐 완료</li> <li>○ 기존관세유지, 관세인하, 관세할당, 양허제외 등 (8%)</li> </ul>

# Voices From The Fields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 유통이력관리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 유통이력관리의 목적

수입물품 중 원산지의 둔갑이나 비식용의 식용둔갑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에서 최종판매시점까지 유통업자의 신고를 통해 당해 물품의 유통내역을 파악하고 추적 및 관리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 유통이력관리 효과

- 수입먹거리, 의약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적 불안감의 해소를 기대한다.
- 해외 및 국내에서 특정 수입물품의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한 회수체계를 구축한다.
- 유통내역을 활용하여 수입후 원산지둔갑,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이 용이하여 선의의 소비자,생산자 피해를 방지한다.

###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은 천일염, 대두유(비식용), 복어(금밀복), 안경테, 황기(식품용), 백삼(식품용),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구기자,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식품용), 천궁(식품용),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가리비, 돔 등으로 정해져 있다.

(2013년 9월 현재,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규정 됨)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은 품목의 시급성,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유통이력대상으로

수시로 재검토 된다.

### 유통이력 신고

-유통이력신고 의무자

“수입자”(유통이력대상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자)와 “유통업자”(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양도받아 소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관리하는 자)에게 있다.

-유통이력 신고시기

유통이력신고 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 부터 5일 이내**에 관세청 UNI-PASS에 접속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유통이력 신고방법

-수입자의 경우 관세청 UNI-PASS 에 접속하여 “수입업자유통이력신고”를 클릭하면 자신의 수입내역이 나타나며, 수입신고 건별로 선택하여 “판매내역”을 등록 한다.

-유통업자의 경우 관세청 UNI-PASS 에 접속하여 “유통업체유통이력신고”를 클릭하면 자신의 구입내역이 나타나며, 구입내역별로 선택하여 “판매내역”을 등록 한다.

### 맺음말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로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불안감이 고조되고, 국내 수요가 많고 원산지 둔갑의 우려가 큰 수산물인 명태, 가리비, 돔이 9 월 16 일부터 추가로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되었다.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500 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수입자 및 유통업자의 경우 추가로 지정된 유통이력대상물품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 병 진

[bjkim@customsservice.co.kr](mailto:bjkim@customsservice.co.kr)

#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 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 대상물품 추가 지정

-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로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불안감 고조
- 국내 수요가 많고 원산지 둔갑의 우려가 큰 수산물을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

### □주요 개정내용

- 지정품목 : (3 개 품목) 명태, 가리비, 돔
- 지정기간
  - 명태 : 2013. 9. 16. ~ 2016. 8. 22.
  - 가리비 : 2013. 9. 16 ~ 2014. 8. 22.\*
  - 돔 : 2013. 9. 16 ~ 2014. 8. 22.\*
- \* 품목의 시급성,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속 운영여부 '14 년 재검토

### □시행일자

2013.9.16(월)

## 세관장확인대상 일부 물품 변경

### □품명·세번

스쿠터[9503.00-1200]

### □현행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킥보드(충전지 사용제품을 포함하며, 다만 바퀴에 베어링이 없는 것 또는 연료 사용제품은 제외)
- 완구

### □개정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 □관련법령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명·세번

기타[9503.00-1800]

□현행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키보드(충전지 사용제품을 포함하며, 다만 바퀴에 베어링이 없는 것 또는 연료 사용제품은 제외)
- 완구

□개정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관련법령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명·세번

아이스스케이트와롤러스케이트[9506.70-0000]

□현행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바퀴가 부착된 운동화

□개정안

<삭제>

□관련법령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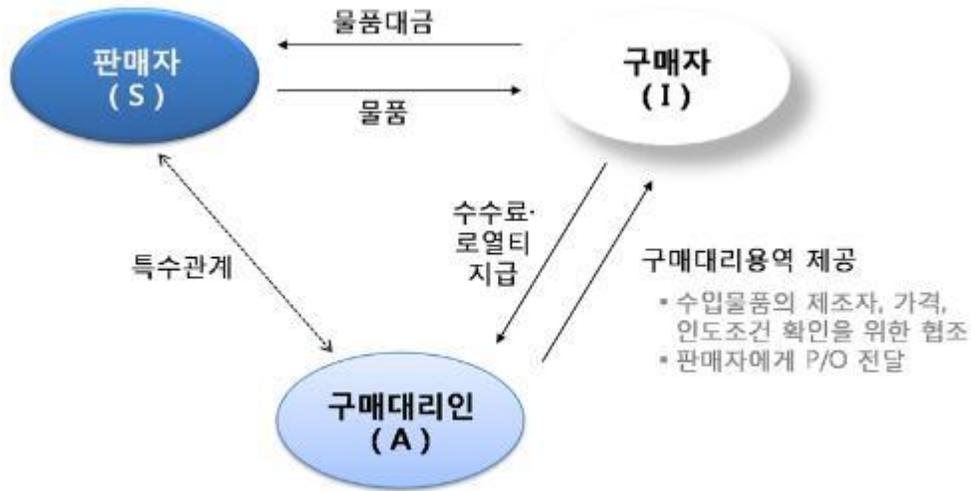
※2013 년 8 월 7 일부터 적용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헌

[dhlee@customsservice.co.kr](mailto:dhlee@customsservice.co.kr)

##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로열티 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HQ547623 2002.02.21.)



□ 거래사실(Facts)

1. 청구경위

가. 쟁점 물품(신발)은 중국에서 제조되어 LA 로 선적되며 수입자(I)가 수입신고 함  
 나. 수입자(I)의 수입신고자료 중에는 홍콩에 소재하는 E 가 판매자로 기재되고, I가 구매자로 기재된 송장이 포함되어 있음  
 다.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TranEaction Value)에 의해 결정됨  
 라. 과세관청은 당시의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I 가 그의 대리인인 A 에게 지급하는 8%의 수수료, 5%의 로열티 그리고 P/O 상에 기재된 2%의 취급수수료(Handling Fee)를 각 각 다음의 이유로 과세함

- ① 수수료 = 판매수수료
- ② 로열티 =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
- ③ 취급수수료 =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마. 수입자는 A 에게 지급하는 8%의 수수료는 진정한 의미의 구매수수료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2%의 취급수수료(handling fee)는 실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부회계처리를 목적으로 P/O 상에 기재한 것이므로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함

## 2. 거래흐름

- (1) I 는 구매하고자 하는 신발을 선택하여 A 에게 통보
- (2) A 는 공급자와 가격 및 인도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I 에게 제공
- (3) I 는 제품명세, 가격, 공급자와 인도조건을 결정한 후 A 에게 구매주문(Purchase Order)
- (4) A 는 P/O 를 E 에게 송부하고, E 는 주문받은 신발 제조하고 E 에게 대금청구서를 송부
- (5) E 가 I 앞으로 발행하는 물품대금청구서와 별도로 A 는 I 에게 수수료 청구서 발행

## 3. 기타 관련사항

- (1) "A"와 "E"의 관계  
가. A 는 전통적으로 신발류 수입자들을 대리하는 구매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임

나. A 가 관여하는 거의 모든 거래에는 E 가 판매자가 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음

- 본인이 구매할 물품을 선정한 후 A 에게 주문
- A 는 주문을 E 에게 전달
- E 는 주문내용을 적절한 제조자에게 전달 (이 때, I 는 제조자에 대한 정보와, E 가 중개인의 역할만 수행한다는 것을 인식함)
- 제조자는 I 에게 물품을 송부함
- I 는 E 에게 물품의 대가를 지급
- A 는 I 에게 별도의 청구서(구매수수료, 로열티)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 받음

다. A 와 E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세관에서 결론을 내림

- 한 개인이 두 회사의 임원임
- 두 회사의 지분을 한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함

### (2) 로열티의 지급

가. A 는 신발류에 대한 상표사용권(Dunlop / Chic)을 허여 받은 자임

나. 비록 A 는 구매대행서비스 요청자인 본인에게 상표사용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A 는

본인으로부터 로열티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신발류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다. A 는 로열티로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제조자 또는 판매자 E 에게 지급하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 □ 쟁점(Issue)

1. A 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판매수수료로 취급하여야 하는가?
2. A 에게 지급되는 로열티가 가산요소에 해당되는가?
3. 본 사안에서의 취급수수료(handling charge)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 1. 법적근거

가.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은 관세법 §1401a 의 규정에 의거한 거래가격방법

나. 거래가격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다음과 같은 법정가산금액을 더한 금액(단,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1) 수입물품의 포장비용/용기비용
- (2)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 (3) 생산지원비용
- (4)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에 따라 직, 간접으로 지급하는 수입물품에 관련된 로열티
- (5) 사후귀속이익

다. 관세법 §1401a(b)(1)(D)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물품과 관련된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2. 쟁점검토

##### 가. 수수료의 처리

- (1) 판매수수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요소

이나, 구매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 수수료는 가산대상이 아님 (① 구매자와 대리인간에 진정 구매대리관계가 존재하고, ② 구매자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구매수수료임을 입증 하여야 함)

(2) 당사자 간 구매대리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본질에 따름 (즉, 실제로 진정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구매대리관계가 성립됨)(Pier1 import Inc. vE. U.E. 1989)

(3) 진정 구매대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사안별로 검토하여야 하지만, 대표적으로 본점이 대리인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하여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함

(4) 법원에서 진정 구매대리관계의 성립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심사하는 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음

- 대리인이 의도하는 역할이 주로 본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 대리인은 선적, 취급, 비용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 상업송장에 본인-대리인의 관계가 표현되어 있는지
- 대리인이 물품의 망실 위험을 부담하는지의 여부
- 대리인이 재정적으로 제품의 제조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5) 본 사안에서 A 가 I 에게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나, A 와 I 간에 진정 구매대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요소를 심사하여야 함

(6) 본 사안의 경우에는 A 와 I 간에 진정 구매대리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I 가 A 에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시하는 대화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음

-서류상으로 I 가 A 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을 대리할 것인지를 지시하지 않음

-판매자인 E 와 A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A 와 I 간에 진정 구매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본 사안에서 I 가 A 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진정한 의미의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매자와 관련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이므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야 함

#### 나. 로열티 지급

(1) SAA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에서는 구매자가 지급하는 로열티와 라이선스료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전하고 있음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가 지급되는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지급된 것인지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됨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과 별개임을 구매자가 입증하는 경우

(3) 본 사안에서는 로열티 금액이 수입물품의 대가와 별개로 지급되므로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4) 본 사안에서 로열티로 지급되는 금액이 수입물품(신발류)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함

-A 와 Chic, A 와 Dunlop 간의 권리사용계약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수입자인 I 는 권리사용관계에서의 당사자도 아니고 A 로부터 권리사용을 허여받지도 않았음

-또한 I 가 A 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A 가 최초권리 보유자(Chic, Dunlop)와 분배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권리사용계약과 I 가 지급한 로열티 금액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음

(5) 본 사안에서 로열티가 판매자 E 와 특수관계자인 A 에게 지급되고 있는 점을 보아 I 가 지급하는 로열티는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볼 수 있음

#### 다. 취급수수료

(1) 본 사안에서 P/O 상에 기재된 2%의 취급수수료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

(2) 그러나 상기의 금액은 A, E 또는 다른 회사의 I 에 대한 청구서에는 기재되지 않으며, 오로지 I 의 P/O 상에만 기재되는 금액임

(3) 또한 상기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은 대금의 지급을 증빙하는 자료(L/C) 를 통해 확인이 됨

(4) 상기와 같은 이유로 2%의 취급수수료는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 □ 결정(Holding)

1. I 가 A 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진정한 의미의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고,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거래가격에 포함

2. I 가 A 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임

3. 취급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